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01일

나운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천	정 *천 2001-08-11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나운로 (나운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21